

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임용 및 복무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3.10.		16		
2	2015.10.28.		17		
3	2019.12.27.		18		
4	2025.8.13.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임용 및 복무 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「병역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7>

제2조 (지원자격) 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은 본 대학원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단, 석·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한 자로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2년(4개 학기) 이상을 이수한 자
2. 교과학점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3. 총 이수학점의 평점이 평균 3.0 이상인 자

[전문개정 2019.12.27]

제3조 (임용 및 보수) ① 전문연구요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경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5.10.28., 2019.12.27>

②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「병역법」 제3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, 본교 대학원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7., 2025.8.13.>

③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「병역법」 제37조 제3항에 따라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 <본항 신설 2025.8.13.>

④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 <본항 신설 2025.8.13>

⑤ 임용된 전문연구요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7.>

[중전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<2025.8.13.>]

제4조 (복무) ① 본 대학원 소속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는 대학원장이 총괄한다.

<개정 2007.5.1., 2015.10.28., 2019.12.27>

② 지도교수는 임용기간 중 전문연구요원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연구과제 서식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하고,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연구지도 및 관리감독 하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. <개정 2015.10.28>

③ 지도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15일 전 전문연구요원 연구과제 수행 결과서에 등급을 부여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며, 대학원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 결과와 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. <개정 2007.5.1., 2015.10.28.>

제5조 (외출 및 출장허가) ① 외출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, 외출에서 복귀한 후에는 출퇴근 시스템을 통하여 복귀를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7.5.1., 2011.3.10., 2015.10.28., 2019.12.27>

② 국내·외 출장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 출장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는 출퇴근시스템을 통한 복귀 보고 및 출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5.1., 2011.3.10., 2015.10.28., 2019.12.27.>

제6조 (휴가, 결근 등) ①전문연구요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「직원취업규칙」 제4장(휴가)를 준용한다. <개정 2015.10.28.>

② 전문연구요원이 무단결근한 경우 무단결근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한다. <신설 2019.12.27>

제7조 (편입취소) 전문연구요원이 관할청에서 지정한 편입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문연구요원 신분이 취소되며,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게 된다.

<개정 2019.12.27>

제8조 (당연전직)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전직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28., 2019.12.27>

제9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대학원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19.12.27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7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제3조 제2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.

- <제1호 서식><삭제 2015.10.28>
- <제2호 서식><삭제 2015.10.28.>
- <제3호 서식><삭제 2015.10.28.>
- <제4호 서식><삭제 2015.10.28.>
- <제5호 서식><삭제 2015.10.28.>
- <제6호 서식><삭제 2015.10.28>